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심 사 보 고 서

2026. 4.

문화체육관광위원장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 2025년 5월 20일, 김재원의원 등 11인

나. 회부일자 : 2025년 5월 21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5. 8. 21.)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부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1차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회(2026. 3. 26.) 상정, 축조심사,
의결(수정가결)

제433회 국회(임시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26. 3.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축조심사, 찬반토론, 의결(수정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김재원의원)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제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현행법은 문화예술후원 활성화를 통하여 문화예술의 발전에 기여하고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후원자에 대한 포상, 후원우수기관 인증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화예술 분야는 다른 공익적 분야에 비해 민간으로부터의 후원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여 문화생태계 조성에 어려움이 있는 상황 이므로, 문화예술후원을 보다 활성화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을 확대하거나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을 양성하는 등 후원 인프라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공익법인의 문화예술 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 포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천우정)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육성·지원 시책을 수립·추진하는 근거 조항을 마련하고,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해 실질적인 혜택을 마련하기 위한 제도 및 환경을 조성할 것을 국가 및 지자체의 책무로 규정하며,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에 공익법인을 추가하려는 것으로, 문화예술후원매개의 인적 기반을 확대하고, 문화예술후원자에 대한 혜택을 강화하여 문화예술후원을 장려하려는 입법 취지에 공감할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다만, 개정안의 ‘공익법인’ 용어와 관련하여 공익법인의 정의 및 적용되는 법률을 명확히 규정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법무부의 의견과, 개정안의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중 문화예술 후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으로 명확히 하도록 수정할 필요가 있다는 문화체육관광부의 의견을 심사 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4. 대체토론 요지

없 음

5. 소위원회 심사내용

(문화예술법안심사소위원장 : 임오경위원)

공익법인을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대상 기관에 포함 하는 등의 내용으로, 공익법인의 정의를 보다 명확히 하여 수정의결함.

6. 찬반토론 요지

없 음

7. 심사결과

수정가결

8. 법제사법위원회 체계·자구 심사 내용

별다른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보았음.

※ 심사보고서 붙임서류

1.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2.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제안연월일 : 2026. 3.

제 안 자 : 문화체육관광위원장

수정이유 및 주요내용

공익법인에 대한 정의는 개별 법률마다 다르므로, 문화예술 우수기관 인증 대상 공익법인을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익법인으로 명확히 함(안 제12조제1항).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12조제1항 중 “공익법인 등”을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수정안조문대비표

현	개	수
제12조(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 관은 문화예술후원 을 촉진하기 위하 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u>기업 등</u>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등” 이라 한다)에 대하 여 문화예술후원우 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① ----- ----- ----- ----- ----- ----- <u>기업, 공익</u> <u>법인 등</u> ----- ----- ----- ----- ----- ----- ----- ----- -----.	제12조(문화예술후원 우수기관 인증) ① ----- ----- ----- ----- ----- ----- <u>공익</u> <u>법인(「공익법인의</u> <u>설립·운영에 관한</u> <u>법률」 제2조에 따</u> <u>른 공익법인을 말</u> <u>한다) 등</u> ----- ----- ----- ----- ----- ----- ----- ----- -----.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② ~ ⑥ (개정안과 같음)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에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5.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제3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제1항 중 “기업 등”을 “기업, 공익법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을 말한다) 등”으로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 (생략) <u><신설></u>	제2조(정의) ----- -----. 1. ~ 4. (현행과 같음) 5. <u>“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이란 문화예술후원을 매개하거나 지원하는 등 문화예술후원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생략) <u><신설></u>	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u>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문화예술후원의 활성화를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자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관련 제도와 여건을 조성하여야 한다.</u>
<u><신설></u>	제8조의2(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① <u>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성·지원 등에 관한 시책을 수립·추진할 수 있다.</u> ② <u>제1항에 따른 시책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u>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문화예술후원을 촉진하기 위하여 문화예술후원을 모범적으로 행하고 있는 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하 “기업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을 할 수 있다.

한다.

1.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의 육
성 및 지원

2. 문화예술후원매개인력 관련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3. 그 밖에 문화예술후원매개인
력의 육성·지원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
하는 사항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
항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인
력의 육성·지원에 관한 업무
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전문기관이나 단체
에 위탁할 수 있다.

제12조(문화예술후원우수기관 인증) ① -----

-----기업, 공익법
인(「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
익법인을 말한다) 등-----

② ~ ⑥ (생략)	
	② ~ ⑥ (현행과 같음)